

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·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
	주소	팩스번호	
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·검사 업무 수행범위			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·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·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	수수료 없음
국가기술표준 원장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 리 절 차

